「행복나눔 적금」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"행복나눔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"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및『적립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예금 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제 3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또는 법인으로 합니다.

제 4 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.

제 5 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.

제 6 조 적립방법

- ① 고객은 이 예금 가입 시 매월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정기적립식과 매월 월 적립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중에서 적립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② 고객이 제①항의 정기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계약일에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일정일에 적립하여야 하며, 그 금액은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③ 고객이 제①항의 자유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적립 금액은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, 1개월 적립한도는 1백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

제 7 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이자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합니다.
-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 청구할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④ 은행은 개인가입자에 한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.3%의 우대이자율을 만기 해지 시제공합니다.
 - 당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월 1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연 0.1%
 - 봉사활동 인증서 제시 또는 2인 이상 동시 가입 시 연 0.1%
 - 계약일 이후 만기일 이전에 공익☞기부 단체, 기관 등에 기부하고 증빙자료 제시 시 연 0.1% (해당기관 발급 기부금 영수증 또는 당행에서 입금한 경우는 무통장입금증 제시)

제 8 조 기타

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등록하고,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계좌들의 12개월간 연 평균잔액의 0.1%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연1회 후원금을 제공합니다. 단, 단체 또는 기관별 등록된 계좌수가 (500좌)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, 익년으로 이월하지 않습니다.

<부칙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된다.